

나. 정의의 실현

(1) 국가기관 및 책임자의 사과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관련자의 처벌 등 정의의 실현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진실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희생자를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첫걸음이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사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제적 보상 등으로 마무리하려는 조치는 사회 정의를 혼란스럽게 만들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일은 못된다. 잘못된 역사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때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사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권고 3: 정부는 위원회가 규명한 과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이 늦어진 점과,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위로하고 사과하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3-1.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잘못, 과거 검찰에 의한 사건의 은폐 또는 방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3-2.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 중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 또는 은폐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독재정권기 강제징집, 녹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진실이 현재까지 은폐되거나 규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향후 군이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3-3.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경찰청장은 과거 자신의 기관이 의문사 사건의 발생 또는 은폐에 책임이 있거나,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조기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과거 위 기관들이 행했던 고문 등의 가혹 행위와 프락치 공작 등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며, 향후 이러한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위원회는 '불처벌(impunity)'에 반대한다. 과거에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와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문사와 관련된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적인 수사 등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은 그 당시에도 불법이었다. 권위주의 통치로 말미암아 자행된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권고 4: 위원회는 조사결과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의문사 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그 책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계기관은 위원회가 고발한 이들 사건들에 대하여 성의 있는

수사와 사법처리를 해야한다.

권고 5: 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를 행한 가해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지 못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반인륜적 범죄 또는 국가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하는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5-1. 국가폭력으로 인한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가 국회나 정부에 의해 취해질 경우 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러한 범죄를 자행했거나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응당 사법심판을 받아야 한다.

권고 6: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조작 및 은폐행위 과정에 책임이 있거나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비협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문책하기를 권고한다.

다.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1) 명예회복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문사 피해자)은 간첩, 용공세력, 난동분자, 자살자로 간주되어 왔다. 그에 따라 사망자는 물론 그 유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관련기관은 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권고 7: 군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그리고 사건의 은폐, 축소에 의해 피해를 받은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이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 또는 타살 당했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국립묘지 안장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고문과 프락치 강요에 의해 자살이 강요되었거나 유도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같은 수준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고 8 : 강제징집되어 사망한 학생에 대해 학교 당국은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고 9: 정부는 유족들이 오랜 기간 전개해온 진상규명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문사자의 유족들은 독재권력의 은폐행위와 국가기관들의 억압적인 태도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헌신적인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자는 물론 그 유족들도 간첩 또는 불순세력자의 가족이라고 매도당하면서 그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받았다. 심지어 이웃 주민과 친인척으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는 유족들이 그 동안 전개한 진상규명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으며, 또 그 자체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고 10: 의문사 피해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2) 기념사업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문사 사건들의 경우 오랫동안 그 진상이 은폐된 채 남아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유가족들의 고통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음을 유념한다. 기억은 과거 침묵에 대한 반성이며, 적극적인 관심의 표명이다. 또 불행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고 예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위원회는 지난날 독재권력이 자행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11: 의문사자를 추모하는 기념조형물을 설립하고, 향후 만들어질 민주화운동기념관에 의문사와 관련된 별도 전시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조형물과 전시실은 의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경건한 애도를 표하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국민들이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야 한다.

11-1 의문사자가 생활했던 각 학교, 공장, 군부대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는 이 일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권고 12: 아우슈비츠기념관이나 홀로코스트기념관(Holocaust Museum) 등을 참조하여 독재정권기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념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념관에는 고문도구, 정치범이 수용되었던 독방, 감시도구, 독재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각종 사진 및 전시물 등을 전시하며, 왜 독재정권이 등장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군림할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기념관은 의문사자를 비롯해 폭력적인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또 과거 독재권력의 폭력성과 인권침해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독재권력과 국가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역사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권고 13: 정부는 교과서에 의문사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불행했던 역사의 사실을 알리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 위원회 보고서의 배포 및 활용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위원회가 그 동안 행한 조사 활동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국가기관에 의해 널리 배포하고, 참고하게 함으로써 의문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기억하는데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권고 14: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각 정부기관, 지방 단치 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공직자들과 군인의 인권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위원회 생산 및 수집 자료의 보존 및 공개

위원회가 조사활동 중 생산하거나 수집한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될 것이다. 위원회 기록물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역사연구의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권고 15: 정부기록보존소는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5-1. 정부기록보존소는 위원회의 기록물(관련 문서 및 비디오 테이프 등 영상 자료 일체)을 다른 기관의 기록물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기록으로 분류하고, 보관해야 한다. 기록의 분류는 가급적 위원회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15-2.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문서를 비롯한, 국정원, 기무사 등의 정부기관 생산 및 보관 문서들의 사본도 폐기하지 말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기록에 포함시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15-3.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록이 관련 정부기관, 단체 및 전문가, 언론인, 유족 등과 기타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3.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

가. 피해 유형³⁾

(1) 피해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는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인척, 부양가족, 연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까지 포함해야 한다.

3) 인용된 구체적 피해사례는 김보덕 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의문사 유족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의문사 유족들을 사건의 진정인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희생자로서 예우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UN에서도 「범죄희생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1985년 11월 29일의 총회의 결안 40/34)에서 “희생자란 ...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처,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상당한 침해를 포함하여 손해를 당한 사람”이고, “희생자라는 용어는 직접적인 희생자의 직계가족이나 부양가족과 고통 중에 있는 희생자를 돕거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희생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희생자의 범주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즉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는 단순히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들의 친인척, 부양가족, 연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함께 고통을 당한 사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2) 변사사건 발생시점에서 받은 피해

사건의 축소은폐 및 일방적인 사인 발표

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먼저 유가족들이 받는 피해는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이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사건발생 자체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는 것과 유가족들에게 사건현장과 증거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건현장과 증거물을 훼손시키며,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 협박, 회유를 하였다.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자살임을 시인’하는 각서나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변사사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관련 국가기관이 유가족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속히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을 국가권력에 저항한 자의 죽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

험했던 것들이 변사사건을 ‘의문사’ 사건으로 전화시키게 되었다.

- 먼 친척이나 이웃을 통해 사건의 발생을 알려 주거내[우종원, 신호수] 거짓통보를 했으며[김용권], 아예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김상원].
- 시신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최종길] 접근을 금지하였다[장석구].
- 유서를 조작하기도 했으며[한희철], 사건현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였고 [허원근], 사건현장을 훼손하거나[김용권], 은폐하였다[정정식].
- 유품을 훼손하였다[이재호].
- 유족을 협박하여 자살임을 시인하게 하는 각서를 받았으며[이윤성], 합의 조건으로 유족을 회유하였다[이덕인].
- 사건의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였다[김창수, 김상원, 이덕인].

부검 및 장례 과정에서의 피해

부검은 ‘죽은 사람을 또 죽인다’, ‘관계기관이 사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견해 때문에 많은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가족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검을 하기도 했고, 강제로 부검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아 부검을 하게 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박창수, 이덕인의 유가족의 경우 시신을 탈취당해 강제부검을 하기도 했다. 반대로 유가족들이 부검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장례 과정에서 장례 방식이나 장례를 빨리 치를 것을 강요받았으며, 장례를 치르면서 했던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특히 군의문사의 경우 유가족이 매장을 원했으나 화장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화장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로 이어져 유가족들이 관계기관의 잘못된 사인추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했다. 유가족들은 이를 관계기관이 장례를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편안히 보내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했다.

- 유족이 도착하기 전에 부검을 했으며[김성수], 강제로 부검에 동의하게 하거나[이운성, 허원근], 부검을 강요하였고[이덕인], 부검동의서를 조작하기도 했다[한영현, 이이동].
- 부검장소에 대한 약속을 파기했으며[정연관], 변호사 참석하에 부검하지는 유족의 요청을 묵살하였고[최우혁], 부검을 회피하였다[김상원].
- 가족묘지에 매장하려고 했으나 화장을 강요하였고[이운성], 유골도 못 가지고 가게 하였다[한영현].
- 가족이 유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체와 함께 매장해 버렸다[신호수].
- 관계기관에서 '시끄러워진다'며 장례를 독촉하였고[한희철, 허원근, 이재호, 김용권, 김준배, 박동학], 친척을 동원하여, 장례를 재촉하였으며[김용권], 냉동고의 전원을 끊어버려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이덕인].
- 관계기관은 누가 조문 오는지를 감시했으며[장석구, 김두황, 우종원], 조문을 통제했고[최우혁], 조문객들의 이름을 적어갔으며[김창수, 김준배], 영안실을 통제했다[이덕인, 김준배].
- 영구차를 감시하며 장례행렬을 통제하였다[최종길, 김용권].

‘비관자살’ ‘빨갱이’이라는 낙인찍기

의문사 유가족들은 의문사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가정을 비판하여 자살하였다고 낙인 찍혀 심한 고통을 받는다. 관련 국가기관들이 발표하는 ‘비관자살’은 피해자가 나약한 사람이며, 피해자의 가정이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관계기관은 죽음의 원인을 각각의 가정이나 변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유가족의 가정에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오점을 남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낙인으로 유가족들은 의문사 피해자의 죽음에 간접적인 가해자로 규정받게 된다. 학생운동을 하지 못하게 군대에 자식을 보내 죽게 하였다는 죄책감으로 최우혁 어머니는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의문사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빨갱이’로 낙인찍혀 ‘감시의 대상’ 혹은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빨

갱이’라는 낙인은 자신들이 부정적인 존재로 타자화되어 같은 공동체와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이웃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직장이동을 강요받았으며, 거주 이전의 부자유 등의 피해를 당했다.

- 가정환경을 비판하여 자살하였다고 왜곡하였고[한영현, 한희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못이기고 자살했다는 죄인 취급을 했으며[허원근], 절도죄를 뒤집어 씌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술을 먹고 자살했다고 왜곡하였다[김창수].
- 기독교 신자에게 자살은 살인죄이므로 그 누명을 벗었다[김성수].
- 유족들이 직장에서 해고 압력을 받게 되고[김상원, 김준배],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으며[김성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한영현].
- 경찰의 감시로 이웃들로부터 고립되었으며[장석구], 동료교수들이 간첩에게 조의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최종길], 지인들이 일체의 연락을 끊고 유족을 외면하였다[최종길].
- 이사갈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감시하여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으며[한영현], 교회도 다섯 곳이나 옮기게 되었다[김성수].
- ‘빨갱이’라는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 의문 제기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된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숨기거나[김창수, 최종길], 공무원이라서 합구하였고[김두황], 연좌제 공포 때문에 침묵을 택하였으며[이운성], 간첩으로 낙인이 찍혀 아예 의문에 대해서 발설하지도 못하였다[최종길].
- 공안기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거주지와 직장을 옮겨 가족이 함께 살았으며[김창수], 간첩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염려가 있으면 이사도 자주 하고 아이들의 학교도 옮겼다[최종길].
- 국내 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유학을 갔으며[최종길], 기관의 감시에 겁을 먹고 학교를 중퇴하였고[이운성], 동생은 연좌제 때문에 출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법대에서 의대로 진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허원근].

(3) 의문사사건으로부터 받은 피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가계부양자를 상실한 경우 부인이나 장남이 자녀와 형제자매의 양육을

위해 대신 그 짐을 짊어져야 했고, 기대 소득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기대 소득원에게 가족 모두가 모든 기대를 걸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막막해하면서 낮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의 사망에 따른 충격과 슬픔으로 생업을 포기해 버리고, 미래를 전혀 설계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생활만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 가계부양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으며[최종길], 가족 전부가 뒷바라지를 해온 기대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거나[한희철, 우종원, 정경식, 박동하], 사건 충격으로 생계부양자가 병을 얻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하였다[김용권].
- 자식이 죽자 모든 사업을 포기하거나[이윤성]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으며[문승필], 가계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이덕인]
- 10여 년 동안 재직했던 직장으로부터 퇴직금과 잔여 급여 등을 받지 못하였으며, 책 출간을 계약하고 집필을 완성한 상태였으나 사망으로 인세 수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최종길].

육체적·정신적 피해

의문사 유가족들에게는 '화병'이 많이 발견된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함으로써 응어려져 있는 화를 풀지 못하여 '화병'을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의문사 사건은 심신에 충격을 주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며, 위장계 장애, 심맥관계 장애, 호흡기 장애, 신경계 장애, 내분비 장애 및 면역계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이는 가족의 죽음 자체로 인한 충격과 이후 계속된 감시, 부검현장 목격, 사건처리 과정의 혼란함 등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더욱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낳은 결과이다. 몇 종류의 약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과 다르게 처신했더라면 가족

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유족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데 의문사한 가족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본다거나 비슷한 상황을 접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였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지속되면서 병을 얻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 혈압이 안 좋았던 부인은 사망사실을 3~4개월 후에 안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였다[김창수].
- 아버지는 피가 썩는 일종의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이윤성].
-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수전증을, 아버지는 뇌출혈로 1년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형은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다[정연관].
-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아들은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김창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몇 번을 입원하였고[이윤성], 아들이 죽고 거의 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문승필].
- 막내 동생은 사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아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큰 형은 장례과정에서 경찰에게 맞아 신체장애가 더 악화되었고 부검을 봐서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이덕인].
- 아버지는 담배를 많이 피웠고, 5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있으며, 어머니는 심장병 약을 먹고 있다[김준배].
-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고혈압과 뇌졸중을 앓았으며, 학생운동을 하지 못하게 군대에 보내 자식을 죽게 하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투신 자살하였다[최우혁].
- 우거서라도 동생을 서울대에 보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한형현] 내가 너무 못 배워 아들을 깔보고 죽였구나[정경식], 군대를 안 보냈으면 살지 않았을까[이이동] 하는 식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 사고 나고 3년까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고,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는 평생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고, 술만 먹으면 아들에게 잘못해준 것만 생각이 났다[우종원].
- 동네 젊은 친구들이 오면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싫어했고[이재호], 자식이 죽고 나서는 산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뭘 봐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다[문승필].

불안과 공포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관계기관의 사건처리 과정을 보면서 불안과 공포를 겪는다. 가정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없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희생될 수 있다는, 사건 발생 당시처럼 관계기관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개인적인 모임에 나가는 것에도 불안함을 느끼는 생활을 십여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다.

- 무고한 아버지도 데려다가 희생시켰는데 굉장히 무서웠다. 사람들이 뒤따라 오면 미행하는 것 같았다[김창수].
- 보안부대장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나도 어디로 끌려가 죽는 건 아닌가 하고 겁이 벌컥 났다[한희철].
- 중앙정보부에서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도록 했고, 간첩으로 둔갑시켜 발표하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다[최종길].
- 도청은 당연히 하겠거니,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볼 수 있다는 느낌은 좋은 게 아니었다[이윤성].
- 오빠가 노조 일을 하다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회사측에 얘기가 들어가면 잘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다[이재호].

가족관계의 재구성, 친척관계의 단절

의문사 이후 가족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가정불화, 가출, 죄책감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한 가정의 장남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남의 부재로 그의 역할과 의무로 차남은 또다른 고통을 겪는다.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된 차남은 의식적으로 사망한 장남을 마음 속에서 지우려 노력하기도 한다.

유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친척이 자신의 피해를 우려하여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거나, 자신의 특수한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친척들과의 모임이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친척들을 통해 유족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친척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관련 기관에 협력한 친척과의 관계를 끊은 경우도 있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자신의 친척들과도 고통을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막내동생이 가출했고 셋째 동생은 휴학했다.
- 아들을 죽게 한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란 의심을 가지게 되어 개종하였고, 종교 문제로 4년 동안 별거하기도 했다.
- 다른 형제들 가슴을 꿰을까봐 숨죽여 울며 서로 내색을 안하고, 식구들이 만나도 이야기도 안 하고 침묵한다.
- 차남이 장남 노릇을 하느라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막내는 장남이 되면서 원망도 하고 잊으려고도 했다.
- 기관의 간섭을 받던 큰아버지가 수배중이던 조카를 밀고하였고, 경찰관인 고종오빠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해 서로 이야기도 안하고 지냈으며, 30여 년 경찰생활을 한 큰아버지가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이 없어 서운하였고, 사촌간에도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
- 친척 일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친척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다.
- 안기부에서 자꾸 압력이 오니까 친척이 안 좋아하고, 경찰이 6개월 동안 진을 치고 있고 전화도 도청하니까 친척들도 무서워서 안 왔으며, '사상 불순자'로 연결이 되면서 친척간에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4) 진상규명 과정에서 입은 피해

관계기관에 의한 피해 - 회유, 협박, 구타, 구속 등

유가족들은 장례까지 치른 후 가족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넣는 등 사건이 가족의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가족들은 관계기관의 협박·회유, 감시·미행·동향파악을 당하게 된다. 관계기관의 협박으로 적극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지 못하였고, 유족 전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었다. 다른 유족과의 집단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을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구타, 구류, 구속 등의 탄압까지 받게 된다.

유가족들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과 접촉하게 되는데, 그들의 비협조와 무관심, 냉대로 인한 고통 역시 크다고 한다.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여전히 사건을 덮고자 성의 없는 수사로 일관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유가족의 요청이나 증언들을 무시한 채 유가족이 가해기관으로 여기는 쪽에 기울어져 수사를 함으로써 겪는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비협조로 일관한 관계기관의 태도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이동 아버지와 이재호 아버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다.

<회유·협박·미행·동향파악·감시>

- 추모식이 학교에서 열리자, 보안사에서 사람을 보내 가족을 모아 놓고 '월북 혐의자'를 위해 시위를 했다며 학생들을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여 납골당 유골을 강물에 뿌리고 유품도 전부 태워버렸다[이운성].
- 동생이 죽고 나서 3번 안기부 안가에 갔는데 '떠들고 다니지 마라'고 회유하거나 '당신 과외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았고, 보안사에 불려갔을 때에도 '명백한 자살이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협박에 굴종해야 하는 게 가슴이 아팠다[한영현].
- 경찰이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아주겠다고 회유하고[정경식], 전화를 해서 '너 신문에 난 것 봤어'라고 이야기하거나 '네 목숨이 두 개냐? 너네 집구석 다 날려버린다고 협박하거나 여자들이 받으면 온갖 음담패설을 하여 공포심이 들게 하였다[김상원].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집전한 첫 추모미사에 중앙정보부가 부인의 참석을 막았으며,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대문 앞에서 외국언론의 취재도 막았다[최종길].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형사들이 쫓아다니기도 했고[장석구], 집회에 참석하려고 나르면 형사들이 미행하였다[이덕인]. 보안사에서 미행하였고, 집 주변에서 두 사람이 주야로 감시하고, 10여 년 동안 전화를 도청하였다[정연관].
- 동생의 학교 간부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회사 임원이 자기 친구라며 은근히 부담을 주고, 제사를 맡아주는 스님에게 가족의 동향을 물어보는 등 수년 동안 괴롭혔으며, 안기부 직원이 수시로 전화를 하여 전화번호를 몇 차례 바꾸기도 하였다[김두황].

<관계기관의 비협조 및 무관심, 왜곡>

- 군에서 사고 현장사진을 준다고 하여 가면 못준다고 번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고[허원근], 서울시경에서 수사결과를 보냈다고 하여 기다리다 안 오면 또 쫓아가고 하여 1년 6개월만에 답장을 받았다[김상원].
- 서울시경 등에 2번이나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되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마찬가지로[김성수], 재조사 진정을 검찰, 청와대 등에 냈는데 유족에게 전혀 연락없이 종결했으며[김준배], 진정을 많이 했으나 2년동안 답변이 없었다.[이재호].

<구타, 연행, 구류, 구속>

- 집회 중 전경에게 곤봉으로 맞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으며[김상원], 집회에 수없이 많이 맞았고, 심지어는 백골단이 영정을 뜯어가고 봉고차에 태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정경식], 인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 때는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이덕인].
- 1988년 11월 14일 미대사관 폭발물 투척사건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에 법정 소란죄로 정연관 어머니가 구속되었고, 우종원 정경식 김성수 어머니도 7~1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정경식 어머니는 1989년 7월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3당합당 항의시위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많이 맞았고, 집회에 나가려고 하면 수시로 연행해 갔다[김성수].
- 1998년에는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가 전부 연행되어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허원근].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의 경제적 피해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면서 '돈을 길에 뿌렸다'고 말한다. 생계는 뒤로 제쳐 놓고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면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갔으며,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다.

-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한희철], 사고가 나서 정신이 헛갈리니 사업이 실패하고 할 일도 줄어들었다[허원근].
- 진상규명에 매달리게 되어 직장에 소홀하게 되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김상원], 손을 놓고 다니다가 사업이 부도가 났으며[이이동], 진상규명을 위해 아버지와 형이 직장을 그만두었다[정연관].
- 진상규명을 위해 같은 부대에 있었던 동료들을 만나고 자료를 얻기 위해 퇴직금과 돈을 팔아 비용을 마련하였다[정연관].
- 2년 동안 여의도에서 농성하고, 왔다갔다 하며 활동하다가 빚이 많이 늘어 돈을 많이 팔았다[김준배].
- 경찰이나 안기부 사람들을 안다고 하며 자료를 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다[정경식].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

유가족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건강을 잃게 되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냉대나 의문사로 잃은 가족을 떠올리면서 생기는 정신적 충격으로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병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유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뭔가 철저히 했다면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을 지니고 살기도 한다. 또한 의문사 유가족들은 의문사 사건이 공론화되어야 진상규명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언론기관에게 호소하지만 외면당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 증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식사 때를 놓치거나 속상하여 굶게 되고, 화김에 술을 먹게 되면서 신경성 위장병을 앓게 되었다[김상원], 정부나 회사가 아들놈이 없어졌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쓸 일이 많고, 잠도 잘 못자고 하면서 병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다[정경식].
- '내 아들 살려내라'고 동서남북으로 싸우러 다니고 울고 다니면서 화병이 도져 고치지도 못한다[이덕인].
- 잊으려고 다 버리고 태워서 후회가 되며[이재호], 증거물인 병영수첩 두 권을 다 태워 진상규명을 어렵게 한 것에 자책감이 들었고[최우혁], 형의 원한을 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였다[김상원].
- 억울함을 기자한테 이야기해도 취재를 안 해 주니까 유서를 써놓고 죽겠다는 생각도 했고[김상원], 어머니는 의문사라 해서 어떤 기자도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우종원].
- '유족이 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했고, '분신은 잘못이다'이라는 식으로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였다[박동학].
- 선거 때 참관인을 하려고 하는데 빨갱이라고 비난하였고, 돈을 받고 진상규명 운동을 한다고 왜곡하였으며[정연관], 친구들이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하고 주위에서는 돈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였다[최우혁].

불처벌로 인한 피해

의문사 유가족들은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가해자만이 아니라 간접적 가해자, 즉 가해와 관련된 기관, 목격자를 했으나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 사건 발생 당시 최고권력자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가해자 집단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유가족들은 이들과 직접 부딪치는 경험은 물론이고 그들과 한 하늘 아래에서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유가족의 진상규명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갖게 만들며, 관계기관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기한 사회와 국가와의 진정한 화해를 방해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 사이에는 가해자 불처벌 문제의 공소시효를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가해 사실에 대한 처벌만이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가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 일부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처벌을 두려워하여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 장기간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가해자들이 버젓이 누리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빈번히 목격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담당 검사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출세하는 걸 볼 때 분노가 생기고[이재문], 진실을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해도 외면하는 가해자에게 '너도 당해봐야 안다'는 분노가 생기기도 한다[이운성].
- 법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자를 찾아가서 똑같이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한영현].
- 지금도 어딜 가다 경찰 방망이만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저런 방망이로 얼마나 우리 아들을 때렸을까 하고[이덕인].

사회적인 책임을 떠맡아 치르는 고통

의문사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회한을 안고 살아가는 동시에 의문의 죽음이 지닌 사회적인 책임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그 고통까지 고려하는 피해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문사자의 죽음은 사회의 일반적인 죽음과 다르게 이해됨으로써 단순한 슬픔이 아닌 지속적인 '고통'이 유가족들의 삶에 부가되어 왔다. 더욱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 사회·정치적 의미들이 더해지면서 그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으로서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유가족들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이 의미하는 사회적인 책임까지 떠맡은 고통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사회적 고통을 피해로써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상에는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문사 당한 당사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되살려낸 유가족들의 노력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공식적인 보상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표-12> 유족피해 증언자

| 진정번호 | 피해자 | 발생시기 | 증언자 | 피해자와의 관계 | 결정 |
|------|-------|------|---------|----------|----|
| 3호 | 신 호 수 | 1986 | 신정학 | 부 | 불능 |
| 4호 | 이 이 동 | 1987 | 이순희 | 여동생 | 기각 |
| 5호 | 김 두 황 | 1983 | 김두순·김두원 | 큰형·둘째형 | 불능 |
| 6호 | 정 경 식 | 1987 | 김을선 | 모 | 불능 |
| 7호 | 최 종 길 | 1973 | 최광준 | 자 | 인정 |
| 9호 | 김 창 수 | 1971 | 김용문 | 자 | 인정 |
| 18호 | 박 태 순 | 1992 | 홍홍유·박희순 | 모·누나 | 불능 |
| 19호 | 이 철 규 | 1989 | 이정진 | 부 | 불능 |
| 21호 | 박 창 수 | 1991 | 김정자 | 모 | 불능 |
| 22호 | 김 준 배 | 1997 | 김현국 | 부 | 인정 |
| 23호 | 이 덕 인 | 1995 | 이기주·김정자 | 부·모 | 인정 |
| 24호 | 우 종 원 | 1985 | 이계남 | 모 | 불능 |
| 25호 | 김 성 수 | 1985 | 전영희 | 모 | 불능 |
| 27호 | 문 승 필 | 1991 | 오순례 | 모 | 불능 |
| 28호 | 정 법 영 | 1978 | 정진동 | 부 | 인정 |
| 29호 | 김 상 원 | 1986 | 김상모 | 남동생 | 기각 |
| 30호 | 이 계 호 | 1989 | 이순례·강성춘 | 여동생·처남 | 불능 |
| 32호 | 허 월 근 | 1984 | 허영춘 | 부 | 기각 |
| 39호 | 이 윤 성 | 1983 | 박정관 | 매형 | 인정 |
| 41호 | 정 연 관 | 1987 | 임분이 | 모 | 기각 |
| 49호 | 한 영 현 | 1983 | 한강현 | 형 | 인정 |
| 53호 | 한 희 철 | 1983 | 한상훈·김인연 | 부·모 | 인정 |
| 63호 | 김 용 권 | 1987 | 박명선·박광질 | 모·이모 | 불능 |
| 64호 | 최 우 혁 | 1987 | 최봉규 | 부 | 불능 |
| 79호 | 박 동 학 | 1997 | 박동선 | 누나 | 인정 |
| 83호 | 이 재 문 | 1981 | 김재원 | 처 | 기각 |
| 84호 | 장 석 구 | 1975 | 고혜경 | 처 | 인정 |

나. 피해보상 방안

의문사 사건은 심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이유 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여타의 이유로, 무고한 시민이 고문과 폭행, 감금, 추격과 감시, 불법행위의 방조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생명권을 박탈당한 사건이 전형적인 의문사 사건이었다.

그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은 공권력으로부터 비롯된 희생이 의문사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관계 유족에게까지 확대됐다는 사실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유족은 가족의 일원이 사망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정황을 둘러싼 의혹을 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피해 역시 공권력에 기인한 것들이었다. 공권력은 이미 가족의 일원을 죽음의 상황에 몰아 넣음으로써 유족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이자, 사건 발생 후 수사과정과 장례, 진상규명활동 중에도 다른 피해를 입도록 직·간접적 역할을 한 이중의 가해자였다. 이 점에서 의문사 유족은 단순한 사건 진정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건의 단순한 관련자라기보다 의문사자와 동일한 공권력의 희생자이다.

공권력이 낳은 유족의 피해는 “인정” 사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선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의문사자의 사망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 사건 이외의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그 죽음이 위법한 공권력의 작용과 무관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공권력은 일방적이고 밀폐된 수사과정을 통해 의혹을 유발시킨 “의문사”의 원인 제공자였다. 공권력은 유족의 의혹 해소 노력에 대해 비협조 내지 방해로 대응했으며, 심지어 유족에게 “불순분자”, “문제가정” 등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이러한 피해는 다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희생 등 여러 형태의 추가적 피해로 이어졌다.⁴⁾

4)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진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와 “사회국가”의 이념을 골자로 한 민주적 정치체제를 명문화해왔다. 헌법은 항상 국가에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을 부과해왔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국가의 구제·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 구제와 회복을 위한 조치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 규범⁵⁾의 구현 방식이자 필수요건인 것이다. 특히 의문사 사건처럼 희생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거기에 취해져야 할 국가 조치의 필요성은 한층 지대하다.

더욱이 현재는 공공연한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팔목할만한 민주화를 이룬 시점이기에, 민주주의는 법률상의 언명에 머물지 않고 그 만큼 ‘현실의 것’으로 자리잡게 됐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단을 갖고 있었다면, 의문사 유족은 분명히 국가로부터 정당하고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족은 필요한 증거와 법적·행정적 수단 모두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시대의 상황적 조건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화와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야 국가보상의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상규명'과 함께(제1조[목적], 제4조[업무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심의'와 '결정'을 포함시켰다(제24조[진정의 기각], 제24조의 2[진상규명 불능 규정], 제26조[구제조치 등]).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위원회의 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정” 사건만을 “의문사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사법상의 “의문사 사건”은 그 동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위원회 활동 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예정한 진정·직권 조사 사건 모두를 말한다(제2조[정의], 제4조[업무 등]). 그리고 “인정” 사건은 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확정된 “의문사 사건” 내의 특정 범주인 것이다. 이 때 “인정”의 의미는 본문에서 서술한 바처럼 유족의 피해상황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문사 유족의 피해상황과 그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 또는 “기각” 사건 가운데 특수한 예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조약 및 법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바,⁶⁾ 국제규약에 근거해서도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요청되고 있다. 기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이나 국제법정의 판결에 의하면, 국가는 의문사 유족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희생자에게 반드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가지는 인권 존중의 의무에는 이미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⁷⁾ 특히 정부가 1990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각 당사국에게 이 규약에서 승인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에 대해 합당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규범화하고 있다.⁸⁾

유족의 희생과 고통은 어떠한 사후 조치로도 완전히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은 유족이 의문사 사건에서 비롯된 제반 곤경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가 스스로가 공권력의 과거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사죄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유족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시민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사회에 복귀하는 중요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족 피해의 보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라는 법치주의적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반민주적 가치의 규율과 사건 재발의 방지라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볼 때 피해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조치가 위원회 설치의 취지인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에 상응하는 것임은 분

6) 대한민국헌법 제6조

7) Theo van Bove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UN Doc. No. E/CN. 4/Sub. 2/19 93, July 8, 1993), Kritz, N. J. ed., *Transitional Justice*, Vol. 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5, pp. 547~548

8) (a) of Clause 3, Article 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명하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법률, 의문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권고 16 :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 유족 모두에게 보상을 한다. 그리고 이 보상은 피해의 원인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의 차원에서 한다.

위원회는 의문사 유족에게 보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인정" 사건의 유족에 대해서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⁹⁾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유족 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다른 한편 위원회는 의문사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종료 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국가의 회복조치를 '반드시' 권고해야만 한다.¹¹⁾ 즉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이 유족의 피해보상 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권고의무 조항은 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한 결정 외에도 추가적인 국가조치가 있음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위원회가 권고하는 보상과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기본 성격 면에서 다르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된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그 책

9) 의문사법 제26조(구제조치 등)

10) 민주화보상법 제17조(결정전치주의)

11) 의문사법 제30조(보고 등)

임을 지는 의미의 것이 아니다. 반면 위원회의 보상방안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유족의 피해를 구제·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위원회의 후속조치가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가 피해 유족에게 특정한 보상조치를 직접 취할 수는 없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주화보상법의 규정과는 독립적으로 마련된 보상방안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인정" 사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문사자 및 유족이 위법한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만큼은 밝혀져서 의문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제조치의 권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국가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의문사법상의 권고의무 조항은 포괄적으로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을 뿐, 피해의 범위를 "인정" 사건 당사자의 죽음으로 국한시키지 않으며, 회복조치가 요망되는 대상을 "인정" 사건의 유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¹²⁾

권고 17: 보상의 내용은 피해 내역에 따라 유족간 차이를 둔다.

17-1. 유족의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피해의 중첩성과 강

12) 위법한 공권력에 기인한 피해 및 보상 범위와 관련하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에 대해 국가와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93. 7. 2. 89나50586). 당시의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하나의 권리로서 신원권(伸冤權)"은 "소위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 가족권의 침해로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마땅히 원고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도에 근거하여 보상을 달리 한다.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의하면 의문사 유족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입은 피해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 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의문사자의 사망
- ②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의문사자의 사망에서 초래된 유족 피해(가계부양과 직장생활상의 피해,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 ③ 의문사자의 사망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망을 인정한 후 위원회의 활동이 있기 전까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입은 유족 피해(사건발생의 은폐, 수사상의 미공개와 일방적·편의적 처리, 유족에 대한 감시와 통제, 진상규명 활동의 비협조 및 방해 등)

그런데 유족마다 입은 피해의 유형과 중첩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보상의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공정하다. 일례로 세 유형의 피해를 모두 당한 유족과 마지막 유형의 피해만을 당한 유족에게 같은 보상 조치를 할 수는 없다. 동일 유형의 피해 안에서도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내용은 그 편차에 따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17-2. 의문사자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었는가의 여부는 보상 내용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들의 피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에 있지, 의문사자와 민주화운동의 관

련성을 평가하는 차원에 있지 않다.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민주화보상법의 절차를 따라 보상받도록 한다. “인정” 사건의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미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원회가 권고하는 보상의 이행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7-3. 유족의 피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범주화, 보상의 세부 기준 마련 등은 관련 법령과 실무 주체에 일임한다. 단 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공권력이었으므로 피해의 유형과 강도를 특정화하는 작업은 ‘유족 입증’의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권고 18: 보상의 방법으로는 피해의 강도와 보상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현금의 일시불’ 외에도 연금 지급과 의료, 교육, 취업 등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문사 유족에 대한 보상의 일차적 목적은 피해상황이 초래한 유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피해상황을 최대한 제거 또는 구제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보상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하며, 피해 유족에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영해서 마련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행 “국가배상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현금의 일시불’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실현되기만 한다면 ‘현금의 일시불’이 유족의 어려움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일조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는 의문사 사건의 피해상황이 가지는 특수성을 주목해야 한다.

의문사 유족의 피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표준에 비추어 극히 기초적인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 만큼 피해상황이 유족에게

가한 생활상의 고통과 곤경은 컸으며, 유족 피해에 대한 구제·회복 조치가 절실하고 긴급했다. 더구나 의문사 유족은 권위주의 시대 및 그 유제로 인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 사실에 대한 미구제 상태를 강요받아 왔다. 그리하여 하나의 피해가 또 하나의 피해를 낳았고, 이는 다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졌다. 유족의 피해는 법률적 표현이나 양적 척도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구적인 민주화 추세에 따라 이미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진실위원회”가 활동한 바 있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는 앞의 나라들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그 회복 조치의 경험을 조사·연구하여 각 국에게 권고사항을 제출해 왔다. 그들의 경험과 권고는 위원회의 보상방안 작성에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하는데, 특히 보상이 단순한 현금 지급 외에 다양한 실질적 방식들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보상(reparation)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¹³⁾

첫째, 인권 침해 이전 상태의 최대한 복구(restitution). 여기에는 공민권, 시민권, 주택, 직장, 재산 등의 회복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육체적·정신적 상해, 심리적 고통과 슬픔, 경제적 수입원 및 수입능력의 상실, 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기회의 상실,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비용, 재산이나 사업상의 손실, 명예 훼손, 구제조치를 받고자 법률적 조력을 얻는 데에 소요된 비용 등의 보상이 요구된다.

셋째,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법적·의학적·심리학적 방법을 통한 보호(care)와 용역(service)의 제공(rehabilitation).

13) Theo van Boven, op.cit., pp. 548~549.

넷째, 가해자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¹⁴⁾

권고 19 : 보상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현행 국가배상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19-1. 특별법은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한다.

의문사 유족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위원회의 활동이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현행 국가배상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상청구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국가가 피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선언적 차원에서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보상조치는 불가능해진다.

국가배상법은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¹⁵⁾ 현행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¹⁶⁾ 국가배상 청구권은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시기까지 유효하다.

14) 이상의 권고에 근접하는 보상방안 사례는 칠레, 독일, 남아공 등에서 찾을 수 있다(“Chile: Law Creating The National Corporation for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 Kirtz, N. J. ed., *Op.Cit.*, Vol. 3, pp. 685~695; “Germany: Compensation Acts”, *Ibid.*, pp. 718~737;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Report*, Vol. 5, 1998, pp. 170~195). 위원회의 권고안은 명예회복이나 가해자의 책임 인정, 재발방지 등의 사항을 보상방안과 별도로 취급한다.

15) 국가배상법 제8조(타법과의 관계)

16) 민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런데 권리 소멸시효는 재판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효 이익의 당사자가 원용¹⁷⁾할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해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국가가 앞의 소멸시효 규정을 원용하지 않으면, 의문사 유족의 피해보상 청구는 법정 시효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능하다. 의문사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사건이 동반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의식적으로 법률상의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의문사 유족의 피해 사실도 국가보상의 청구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보상조치 이행의 안정성이란 면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우선 국가가 권리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뜻할 뿐 그 선택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피해를 유발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가만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도 보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¹⁸⁾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설사 국가가 청구권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는다 해도, 위 공무원이 그것을 원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보상조치는 불가능하게 된다.

보상조치의 중요성과 이에 요구되는 보상조치 이행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결국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길밖에 없다. 이 특별법에서 여타 권고사항의 내용과 실행 원칙, 절차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의문사 유족이 위법한 공권력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큼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배제'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17) "원용"이란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2. 특별법은 전술한 권고사항 16~18을 충족시킨 것이어야 한다.

19-3. 특별법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담 특별 부서 또는 기구를 설치하는 규정 및 관련 직제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19-4. 특별법은 피해 당사자인 유족과 인권단체, 관련 전문가 등 시민사회의 견해를 충분히 청취·수렴하는 절차 속에서 제정한다.

19-5. 특별법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의문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흡수한 형태로 제정한다(가칭 "의문사 사건의 보상과 명예회복 및 기념을 위한 특별법").

19-6. 특별법은 위원회가 권고한 보상방안 등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원천을 명시한다.

4.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개선

위원회의 1차적 역할은 '과거'의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궁극적 역할은 '현재'와 '미래'에 미친다. 권위주의 시대의 제도와 관행으로 야기된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과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화합을 온전하게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방안과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국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권위주의 시대와 상이한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거 권위주의 시대 아래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과 유

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분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째,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가 진전됐으나 권위주의의 유산이 모두 청산되지 않았다. 둘째, 과거에는 미처 자각하지 못한 의문사의 요인이 현존한다. 과거의 권위주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인권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문사는 권위주의 체제의 부재 하에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의문사 발생의 원인 및 가능성은 공식적인 '제도' 수준과 사람들의 '관행' 수준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특정한 법령(또는 인권보호장치의 결여)과 그 법령을 운용하는 기관이 해당 공직자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야기하여 의문사가 발생한 경우이고, 후자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해석을 잘못하여 의문사를 촉발시킨 경우이다. 결국 의문사의 재발 방지 역시 두 수준의 구분을 통해 접근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관행'의 전면적 변화는 제도개혁과 아울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공적 영역 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도 개선 중심의 방안을 제시한다.

아래에서 보는 위원회의 권고는 위원회가 어려운 활동 여건 속에서도, 사건 하나 하나에 전력 투구하여 조사·정리하고 토의·평가한 결과이다. 그리고 의문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의문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이다.

가. 수사제도의 개선

의문사자의 죽음 중 상당수는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공권력의 가혹행위로부터 초래됐다. 그리고 가혹행위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가해질 가능성은 현재의 제도적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권고 20: 국가는 모든 피의자가 체포 혹은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영장실질심사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구속을 전제한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에 비하여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이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구속의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관한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심사절차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요청하거나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만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나,¹⁹⁾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할 이유가 별로 없고 강제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은 모든 피의자에게 공통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상을 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한다.

권고 21: 기소 전 구속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한다.

장기간의 구속 역시 피의자를 필요 이상으로 외부와 격리하여 위축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과 검사에 의한 구속기간이 각각 10일이고,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 이내의 구속기간이 연장된다.²⁰⁾ 본래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이며 강제처분을 통한 수사는 예외적으로 최소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²¹⁾ 이러한 기소 전 구속기간은 인권보장 수준이 향상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길

1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20)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21)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에 비하여 수사기법이 과학화·체계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 규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과도히 길게 잡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기간은 각 수사단계에서 상당기간 단축함이 타당하다.²²⁾

권고 22: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인 접견권을 완전히 보장하여야 하며,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 하에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수사과정 중의 인권침해 가능성은 피의자가 변호인에게서 충분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상당 수준 억제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검찰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변호인 접견권²³⁾도 수사 절차 등을 이유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²⁴⁾ 또한 피의자나 그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의자에게 필요한 변호가

22) 국가보안법에 따른 피의자의 경우 수사의 각 단계에서 20일과 30일로 연장하여 구속 처분될 수 있다(제19조). 그 만큼 국가보안법상의 피의자는 수사과정 중에 인권침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23)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 제34조

24) 대검찰청 예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초월하여, 심문 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변호인 접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2-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22-2. 국선 변호인제도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22-3.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수사 중에도 일정 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권고 23: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다.

자백의 증거능력을 폭 넓게 인정하면, 수사기관이 공명심이나 편의주의적 발상을 따라 합리적 수사에 의존하기보다 자백을 얻어내려는 노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가운데에는 그러한 수사 관행이 의문사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사례들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²⁵⁾ 그러나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강요된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충분히 검토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사법적 판단에서 자백이 가지는 증거능력을 좀더 엄격히 한정시킬 것을 권고한다.

25)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0조

23-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검찰은 사유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3-2. 피고인이 특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요청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3-3.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근거를 판결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사인확인제도의 개선

의문사 사건을 발생시킨 요인으로 사인확인제도(또는 檢視제도)²⁶⁾의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문사한 자의 구체적 사망원인 확인은 물론이고,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사인 확인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유형을 불문하고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다수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인 확인 과정이 각 사건을 오랫동안 의문사로 남아 있게 한 중요 원인이다.

진정 제14호 장준하 사건처럼 애초에 전문가의 검시(檢屍)가 없어서 사망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진정 제3호 신호수 사건이나 진정 제25호 김성수 사건처럼 부검을 하였으나 부검 의사가 전문성

26)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체와 그 주변 현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주로 사체를 검사하는 행위로서 검안과 부검 등을 검시(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라 이른다. 따라서 검시(檢屍)는 검시(檢視)에 포함되는 과정이다.

을 갖추지 않아 부검감정서에 의문이 많이 남았던 사건도 있고, 진정 제7호 최종길 사건처럼 전문성을 갖춘 부검의사가 부검하였으나 사건과 관련된 정황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의문을 야기하고 결국은 부검감정서 자체를 불신하게 된 사건도 있다. 또 진정 제54호 변형만 사건이나 진정 제58호 김용성 사건처럼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인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건도 있었다. 의문사위원회 사건에서 검시와 관련된 상황은 표와 같다.

<표-13> 의문사 사건의 검시 현황

| 담당과 | 검시 방법 | 수 | 검시의사 | | | 검시 결과 위원회 수용 여부 | | |
|------|-------|----|------|-----|----|-----------------|-------|----|
| | | | 전문가 | 일반의 | 기타 | 수용 | 부분 수용 | 부정 |
| 조사1과 | 검안 | 3 | | 2 | 1 | | 3 | |
| | 부검 | 7 | 7 | | | | 7 | |
| 조사2과 | 검안 | 5 | | 5 | | 2 | 2 | 1 |
| | 부검 | 12 | 8 | 4 | | 8 | 1 | 3 |
| 조사3과 | 검안 | 9 | | 9 | | 6 | 2 | 1 |
| | 부검 | 14 | 11 | 3 | | 10 | 4 | |
| 특조과 | 검안 | 5 | | 5 | | 1 | 2 | 2 |
| | 부검 | 7 | 3 | 4 | | 3 | | 4 |
| 합계 | | 62 | 29 | 32 | 1 | 30 | 21 | 11 |

제대로 된 검시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를 경시하거나 포기한 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여 변사자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조작한 일이 있었으며, 또 일부는 기본권을 경시하여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사망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사라졌는지 모르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에 걸맞은 국가 제도와 관행의 수립은 부족하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근대 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나라의 검시제도를 고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허술하다. 앞으로 의문사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과 더불어 의문사가 더욱 많아지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권고 24: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檢屍)기관을 설립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에서 문제는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음은 오로지 검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검사는 주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실제로 검시(檢屍)를 담당할 수 있는 직종은 의사일 수밖에 없는데 검시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달리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자격을 갖춘 의사라 할지라도 형사소송 절차의 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종속되므로 실제적인 진실의 발견이나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검시제도의 책임과 권한을 소추기관인 검찰에 두고 있다. 한편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는 검시관(coroner) 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라 부르는 전문적인 검시전담기관에 검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소추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대륙법 계열인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검시관이나 법의관을 두는 것은 전체 사법구조로 보아

허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검사가 검시제도를 주관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비효율적인 검시제도가 운용된다면,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검사의 검시(檢屍) 권한을 이양하지 않더라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전담기구(예: 검시청)를 설립하여, ①검사의 수사권의 일부인 검시 업무를 보완하고, ②경찰의 실제적인 수사 업무에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며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③재판에서는 전문적인 감정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④국민들에게는 정당한 법의 적용과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4-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변사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판단 기능을 분리하여, 경찰과는 독립된 검시 체계를 구축한다.

사인확인의 결과가 유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정성은 검시 실무의 주체가 소신을 갖고 전문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독립성에 의해 확보된다.

그런데 현재의 실정을 보면 경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변사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및 판단을 맡는다.²⁷⁾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의학적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의 기소에 필요한 증거물 획득의 업무도 담당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범죄수사를 보조·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법의학적 판단을 수사의 하위 영역으로만 취급한다.²⁸⁾ 이에 따라 검시의 공정성이 훼손

27)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이나, 1992년 5월 7일 내무부 훈령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운영감독을 경찰청장이 수행’하고 있다.

28)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5조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범죄수

될 수 있고, 기본권 보장이나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검시의 중요성도 경시되기 쉽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 동안에 해온 법의학적 판단이 큰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로부터 독립된 검시체계의 운용을 권고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분야는 분리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시기구로 발족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경찰청의 과학수사 분야와 통합하여 경찰의 수사 업무에 필요한 과학적 검사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고 (예: 일본 경찰청의 경찰과학연구소),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식학 실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 일본 각 현의 경찰과학연구소, 미국 메릴랜드 주 경찰청의 Crime Laboratory). 나아가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연구와 실무를 겸한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예: 미국의 FBI Crime Laboratory).

24.2. 검시가 필요한 죽음의 실체를 파악한다.

검시의 범위는 반드시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사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최근 들어 범죄와 관련 없는 직업병이나 산재로 인한 사망, 보험과 관련된 죽음 등에 대한 사망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와 관련 없는 사망은 단순한 병사나 사고사로 취급하여 사건이 종결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그 원인 규명이 어렵고 결국 피해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민사사건에 관련된 죽음 일지라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사망하는 사망자의 수는 약 24만 3천 명에

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른다.²⁹⁾ 사망원인 가운데 외인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14% 정도이다. 또 2001년에 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변사자는 26,088명이고, 살인 사건 피해자는 1,051명이다.³⁰⁾ 원칙적으로 변사자는 모두 검시대상에 속하지만, 검시의 대상은 그보다 많다. 왜냐하면 비록 나중에 병사임이 밝혀지더라도 사망의 상황에서 변사의 의심이 있는 죽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한 지역에서 검시의 대상이 되는 죽음은 전체의 15% 내지 40%이다. 가장 적은 예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검시를 해야 할 죽음은 전체 사망자 약 25만 명의 15%인 37,000명 정도이고,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라 변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약 26,000명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변사자 가운데 부검을 하는 비율은 1/3~2/3이므로, 한 해에 최소 8,600건의 부검이 시행되어야 하고, 최대 24,000건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검시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일년에 시행하는 부검은 2001년에 서울 본소의 2,709건을 비롯하여 4,339건이고,³¹⁾ 그 외에 4곳의 의과대학 법의학고실과 병리학고실 그리고 일반의사가 담당하는 부검을 모두 합하여도 우리나라 전체의 부검 수는 6,000건을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이 필요한 주검일지라도 부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검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600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비록 적은 수의 죽음일지라도 타살이 병사 또는 사고사로 오인되는 경우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

24.3. 새로운 검시제도는 모범적인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청취하여 이를 반영해서 확정한다.

29)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1.

30) 경찰청, 『범죄분석』, 2001

3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보』, 2001

법을 체계가 대륙법 계열이든 영미법 계열이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어떤 나라라도 국민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법률 체계에 맞는 검시제도를 갖추고 있다.

<표-14> 검시제도

| 법 체계 | 영미법 | | 대륙법 | | |
|--------|--------------|--------|--------|------------|--------------|
| 검시 체계 | 전담검시제도 | | 겸임검시제도 | | |
| 검시제도 | 검시관제도 | 법의학관제도 | 사법검시위주 | 행정검시위주 | |
| 검시책임자 | 검시관 | 법의학관 | 검사 | 행정검시 | 사법검시 |
| 검시집행자 | 검시관 보조관 | 법의학관 | 경찰관 | 경찰관 | |
| 부검시행자 | 법의학사 병리의사 | 법의학관 | 의사 | 감찰의 법정의 | 법의학사 병리의사 |
| 부검결정권자 | 검시관 | 법의학관 | 판사 | 행정책임자 | 판사 |

이들 국가의 검시제도에서 중점을 두는 목표는 ① 검시과정의 신속성, ② 검시책임자를 비롯한 검시 종사자의 전문성, ③ 수사와 검시의 통합성, ④ 검시기구의 독립성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 옹호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다.

권고 25: 합당한 사인확인제도(검시제도)의 근거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우리나라에서 검시(檢視)의 책임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는 검시해야 할 변사 사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검시를 실제로 집행하는 직책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경찰관이다. 검시(檢視)가 비록 법률적 행위일지라도 그 집행에는 반드시 의사의 검시(檢屍)가 필요하다. 검시는 법률적으로 검사의 업무이지만 집행은 경찰관이 수행하고, 검시의 실무는 의사가 수행한다. 또 검사가 변사체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부검의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변사자에 대한 조사가 지휘, 집행, 실행, 부검 여부 판단의 결정에서 서로 다른 직책이 관여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분산된 책임에 충실하게 되면, 검시 본디의 목적인 실체적인 사실 확인과 인권 보호의 측면은 간과되기 쉽다.

더욱이 검시의 대상이 될 사망의 양태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한 법규가 없어, 검시의 책임이 분산된 우리 현실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할 죽음이 자칫 은폐의 대상이 되거나 간과하게 될 수 있다.

25-1. 형사소송법, 시체해부보존법, 의료법에 법의학적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망의 종류를 명시한다. 그 대상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망을 포함한다.

- ① 사인 불명의 사망
- ② 폭력을 비롯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망
- ③ 외상이 있거나 다양한 외인에서 초래된 사망
- ④ 중독사고에 의한 사망
- 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 ⑥ 병원 도착 전까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 ⑦ 병원에서 시술 중 발생한 사망

⑧ 각종 감금·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⑨ 입양아의 사망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인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규는 어느 것도 법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망의 종류를 적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선 “변사” 신고의 누락이 빈번할 수 있고, 다음으로 부검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적정 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 만큼 형사소송법상 검시(檢視)의 책임 주체인 검사가 일반 임상의학의 사망진단서와 검안소견 등에 의존한 ‘비전문적’ 판단에 따라 사체를 처리할 확률이 높다. 요컨대 의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형사소송법, 시체해부보존법, 의료법에 변사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망의 종류를 명시하여 열거하고, 이들에 대해서 법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행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25-2.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망의 경우 법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범죄의 현장에서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 규칙에도 위에서 열거한 사망의 종류라면, 비록 범죄의 의심이 없더라도 법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25-3. “호적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사자나 신원 불명의 주검이 법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망신고나 매장·화장되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사망은 유가족 등이 행정관청(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직접 사망신고 함으로써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변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의사가 유가족이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교부한 사망진단서를 기준으로 사망원인이 확인된다. 더욱이 ‘인우증명서’에 의한 사망진단이 가능한 현실에서는 도서·벽지가 아니더라도 유가족이나 이웃의 증명으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도 있다.³²⁾

정확하지 않은 사망원인으로 매장 또는 화장된 이후라면 적절한 사인 확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망신고는 반드시 사망을 진단한 의료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법의학적 검사를 거친 시체검안서만으로 접수하며, 사망을 비롯한 인구통태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26: 법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문제는 불합리한 제도적 현실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의 개선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의 자원이 존재해야 한다. 사인 확인제도에 필요한 직책은 법의학 전문의사뿐이 아니다. 의사에는 법의병리학 전문의사(forensic pathologist)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그 외에도 법치의학 전문 치과의사, 법정신의학 전문의사 등이 필요하다. 직종을 확대하면, 법인류학자(forensic anthropologist), 법독물학자(forensic toxicologist), 법유전학자(forensic geneticist), 생물학자(biologist), 곤충학자(entomologist), 식물학자(botanist) 외에도 실제로 현장 감식 등의 범죄학에 필요한 탄도 전문가, 지문 전문가, 흔적 전문가, 섬유 전문가, 모발 전문가, 음성분석가, 화재감식가, 교통공학자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제도 개선 여부를 떠나, 지금 당장에도 법

32)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통계는 그 정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의학적 검사와 판단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그들을 양성하는 기관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실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인확인과 관련된 법의학적 판단은 상당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맡겨질 수 있고, 오류에 찬 결과 속에서 의문사를 유발하게 된다.³³⁾

26-1. 법의학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법의학 전문가의 양성이 오로지 의과대학에 맡겨진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법의학교실을 개설하고 법의학 교수가 있는 의과대학은 5곳이다.³⁴⁾

일본은 우리와 법률 체계가 비슷하고, 사회 제도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법의학 전문의사가 없더라도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개설하도록 규정한 일본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크다. 일본의 검시제도가 비록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미국의 제도와 비슷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검시 업무는 전국의 의과대학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법의학교실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의 제도에서는 의과대학에서는 법의학 전문의사를 양성하지 않으며, 전문가 양성은 졸업후교육에 포함하여 법의관실(Medical Examiner's Office)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의학 전문가를 일본처럼 의과대학에서 양성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졸업후교육에서 양성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33) 2002년 7월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가 9명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실무 능력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대한법의학회,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29쪽).

34) 고려대 의대, 서울대 의대, 경북대 의대, 전남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맡긴 우리의 의료 현실에서 사립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6-2.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원, 장례전문가, 경찰공의 등에 대해서도 법의학적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정규적 체계를 마련한다.

법의학은 법의학 전문가만을 위한 지식은 아니다.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원들처럼 직무에 따라 변사자를 만나게 되는 직종에서도 법의학지식은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기초지식을 교육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사회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다. 행형제도의 개선

의문사자 가운데 상당수는 행형시설 수용 중에 사망하였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들의 죽음은 행형시설 내에서 행해진 각종 인권침해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정치적으로 피구금 상태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제도의 특징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국가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당시 행형제도가 그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조장한 것은 분명하며, 인권침해의 요소는 현재의 행형제도 내에도 많이 남아 있다. 최근에도 수형자의 죽음이 위법한 공권력행사로부터 초래됐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바,³⁵⁾ 의문사 발생의 가능성을 가지는 행형제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35) 광주인권운동센터 외, "잇따른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2001. 1. 24.); 오창익, "한국의 감옥: 죄만 있고 생명이나 인권은 없는 격리 구금 시설", 『당대비평』(2002. 여름.) 등.

권고 27: 행형법의 목적 조항에서 수용자의 내심에 대한 개입을 시사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국가는 현재 시행중인 행형법의 기본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1조는 입법 목적 중 하나로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의 “함양”을 들고 있다. 이는 공권력이 특정한 “양심과 사상”을 공식화 해놓고 이를 수용자에게 강요할 수 있음을 예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것으로, 여타 민주주의 국가의 행형관계법에서 찾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러한 행형법의 입법목적이 그러한 의도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문구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될 수는 있으나 위 조항이 행형법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조항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권고 28: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의 차별 처우를 없앤다.

어떤 수용자도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행형시설 안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처벌의 형태를 띠는 등 흔히 헌법상의 한계를 넘어선 기본권 제한에 이른다. 현행 행형법도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특정 수용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및 훈령 등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를 명시해놓았다.³⁶⁾ 국가는 행형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무부령, 법무부훈령 등에 “공안사범”과 “공안관련사범”에 대해서 차별처우를 하도록 한 모든 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권고 29: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한다.

위원회는 조사활동 결과 사회보호감호제가 낳은 극단의 인권유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와 같은 인권 침해가 현재 반복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제도가 현존하는 한에서 제도에 내재된 인권 침해적 요소 또한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보호감호제는 입법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은 애초 전두환을 비롯한 내란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사회보호감호제는 누구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규정³⁷⁾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 받은 사람에게, 행형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내용의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점은 현행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내용”과 그 시행령의 “보호감호 방법”이 행형법과 다른 취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³⁸⁾ 또한 사회보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36) 더욱이 “공안사범의 정의”(법무부 훈령 제396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자 등을 “공안관련사범”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위반자는 물론이고 포괄적인 사회비판세력에 든다 할 사람들조차 일반 수용자와 다른 처우를 받게 한다.

37) 대한민국헌법 제13조 1항

38) 사회보호법 제7조, 사회보호법 시행령 제3조

하고 있다.³⁹⁾ 즉 “처벌”의 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처분을 받는 사람들은 빈곤 계층에 속한 경우가 많고 그 행위도 절도와 같은 소위 빈곤범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보호감호 대상의 특징으로 보아서도 신체 구속과 이른바 “교화”의 기간을 늘이는 것보다 사회정책적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권고 30: 수용자에게 충분한 외부 통신권과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한다.

행형시설의 폐쇄성은 의문사 발생의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개연성은 외부의 관찰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동안 행형당국은 시설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전달하는 수용자의 집필과 서신 발송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다. 행형시설의 폐쇄성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과 통한다. 수용자가 행형시설 안에서 입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변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때, 이것은 그 시설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며 의문사와 같은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국가는 행형시설 운영의 공개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39) 사회보호법 제42조

30-1. 수용자의 집필이 제한되는 예외의 경우를 법률로 명확히 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명령과 훈령 등 규칙을 정비한다.

행형법은 집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교화 상 부적당한 경우”로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범위가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집필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남용 여지가 크고 그 만큼 수용자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외부로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하게 된다.

30-2.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복 또는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변호사, 국가의 각종 민원창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발송하는 서신은 검열을 금지한다.

행형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서신 검열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이 역시 수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현행 행형법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만을 검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타의 모든 서신에 대해서는 검열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⁴⁰⁾ 그러나 수용자가 서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와 관련한 서신에 대한 검열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30-3. 수용자가 입소시 권리구제 수단을 서면과 교육으로 반드시 고

40) 행형법 제18조의 2, 제66조 2항

지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형법은 신입 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청원”만을 언급하고, 그 고지 방식이나 여타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고지 여부조차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⁴¹⁾ 수용자가 권리구제 수단을 모른다면 그것의 활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가는 행형시설의 관리자가 수용자 입소시 권리구제 수단을 서면과 교육으로 필히 고지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권고 31: 수용자에게 계구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직접 가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행형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 남용은 여타의 요인과 결합하여 의문사의 정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형법은 계구의 사용 요건에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필요성을 포함시켜 놓았다.⁴²⁾ 계구의 남용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국가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형법을 개정하여, 계구 사용이 가능

41) 행형법 제8조의 2

42) 행형법 제14조 1항

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정해야 한다.

31-1. 사용 가능한 계구 가운데 “사슬”은 제외한다.

국제인권 기준에 따르면 사슬은 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형법은 계구의 하나로서 사슬을 포함시켰고, 그 시행령은 사슬을 행형시설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⁴³⁾ 사슬은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계구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1-2. 계구 사용의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구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한다.

계구의 남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절차를 좀더 엄격히 제도화하고 계구를 사용한 행형시설 실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행형법에 계구 사용의 사후보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용 전에 그 이유와 방법 등을 해당 수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계구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구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받도록 해야 한다.

43) 행형법 제14조 2항,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2항

권고 32: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징벌제도는 계구 사용과 마찬가지로 행형시설의 관리자가 수용자를 통제·규율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러한 이유로 징벌제도가 남용될 경우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징벌의 시행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징벌제도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흡하다. 징벌의 시행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32-1. 징벌 혐의자에 대해 접견, 서신수발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형시설 관리자가 수용자의 자기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32-2. 징벌 선고가 있는 후 수용자가 할 수 있는 재심 또는 불복절차를 명문화한다.

32-3. 징벌의 종류나 그 구체적 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명령 및 훈령상의 규정을 삭제한다.

32-4. 징벌이 종료된 후 같은 종류의 징벌이 연속하여 부과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금치의 경우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간격을 두고 부과·집행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군대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33: “군사시설보호법”상에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사망 사건에 한해서 군 시설에 대한 유족의 접근이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유족들의 현장 접근과 조사가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시설 및 기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약받고 언론이 취재 하더라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형의 변사 사건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대 내 수사사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할 것인 바, 전시 상황 등 예외적 조건을 제외하고는 사망 사건에 관하여 유족에게 현장 등에 대한 접근이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권고 34: 사망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현재의 군 사망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의혹이 제기 되는 사망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상설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즉 유족이 일반적인 군 수사절차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망사건의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군 수사절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의혹의 소지를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4-1.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군 검찰관, 군 검찰·헌병 수사관, 군 내 외의 법의학 전문가, 유족 대표 등으로 한다.

34-2.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관과 수사관은 사건 부대와 직접적 이해관계 또는 동일 지휘계통 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

권고 35 : 군검찰과 헌병 등 수사 주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군대에서 사망 사건 처리가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또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이유 중 하나는, 수사 주체인 보통검찰부와 헌병의 사무 지휘·감독권이 사단, 합대, 전투비행단 등의 사령관에게 귀속되는 현실⁴⁴⁾과 관련돼 있다. 그런데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진급 전망, 부대 전체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사건의 책임이 부대의 구성원에게 귀속되지 않기를 원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도적 상황과 이러한 의도가 잘못 결합되고, 이러한 상황이 해당 부대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경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원회는 각급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의 발동, 수사와 공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36 : 현재의 징병제를 대상자의 희망에 의하여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시행하도록 한다.

44) 군사법원법 제7조 3항, 제40조

징병제는 다양한 가치관, 생활방식, 능력 그리고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연령 이상의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 중에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보다는, '처벌'과 '전과'라는 반대급부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영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 사건의 저변에는 입대과정의 비자발성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대부분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것이고, 그 중 반수 가량이 훈련병, 이등병, 일등병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그러한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방의 의무가 존재하고 이는 모든 국민이 충실히 따라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에는 틀림없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아직 우리 현실이 모병제를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등은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군대 내 사고를 큰 폭으로 감소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범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청하여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다.

권고 37 : 교육·훈련과정에 인권관련 교육을 필수화한다.

흔히 군대는 일반 사회와 동일한 규범과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군대도 예외적 성역일 수 없다. 군대의 특수성이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는 장교와 사병을 구분함이 없이 일상적인 교육·훈련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인권 존중의 군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마. 기타 제도개선 권고 사항

권고 38: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제반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앤다.

지난날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권위주의 세력이 집권 연장을 비롯한 정치적 사익을 실현하고자 동원한 아주 유력한 수단이었다. 그들은 국가긴급권이 허용하는 예외적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비판과 권리 요구를 효과적으로 탄압·규율할 수 있었다. 이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이 발생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위원회의 조사 사건 또한 상당수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긴급권 발동 및 행사 하에서 발생했다.

국가긴급권은 일시적이기는 하나 헌법상에 명시된 권력분립과 인권보장의 정지를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되는 근거는 '국가 존립의 보전'이란 목적에 있다. 이 때 '국가 존립'이란 '헌법질서' 이외의 무엇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국가긴급권은 초입헌적 비상조치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규범과 질서를 유지·보존하려는 수단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은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도래했을 때,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악용한 바와 같은 유사 사태를 예방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법률들을 보완·개정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를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관련 법률들을 개정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

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38-1. 비상사태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8-2. 비상사태의 존재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8-3. 계엄상황에서 사법심사 배제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야 한다.

38-4. 제한되는 권리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상당 부분 축소하여야 한다.

38-5. 비상조치권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38-6. 비상사태로 영향을 받는 권리에 대한 구제수단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권고 39: 국가는 우리사회에 잔존하거나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차별과 소외를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

의문사 사건을 발생시킨 제반 원인의 저변에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가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운동은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겪고 있던 권리의 상실과 빈곤, 문화적 고립 등을 문제시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해 공권력은 공개적·비공개적 탄압이나 규제에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문사 사건의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는 의문사자와 유족을 불문하고, 다수가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직접적 당사자이거나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

고자 노력한 국민이었다.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는 의문사 사건도 상당수가 권위주의 시대의 차별과 소외를 배경으로 발생했다. 의문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일반적' 박탈 뿐 아니라, 권리의 '차별적' 보장 즉 '권리의 권력화'가 낳은 비극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공권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 이어졌고,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도 위법한 공권력과의 관련성도 없는 죽음조차 의문사로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시민의 기본권 향상이 의문사 재발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는 주목할 수 없었던 사회적 의제가 부각되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바로 또 다른 의문사를 잉태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9-1.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비정규직 노동자, 행려병자, 미군 주둔지역의 주민 등이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 실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 사안과 관련된 합당한 제도개혁을 조속히 추진한다.

권고 40: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오·남용으로 발생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 실상을 인정하고, 그 같은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바로 의문사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에 유념하여 국가보안법의 개폐 또는 대체입법을 권고한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피구금상태에서 발생한 의문사는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억압, 무엇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으로부터 초래됐다. 생각과 의사표현이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순한 질서파괴” 행동으로 낙인찍은 권위주의 특유의 정치적 양상이 의문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제도적 기반의 중심으로 존립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표현과 결사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피의자나 수형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제였다.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악용이 가능했던 것은 법 운용상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적 성격과 법규정의 추상성 등에 기인한다. 그러한 까닭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국가보안법 문제 자체의 해결 없이는 곤란하다. 위원회는 이미 김준배 사건(진정 제22호)의 결정에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는 대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⁴⁵⁾

권고 41: 특정 수형자의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현행 준법서약제는 전향서에 대체된 보안장치이다. 석방을 반대급부 삼아, 이른바 “공안(관련)사범”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5)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①냉전시대의 산물로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 ②국제인권 규약에 위배된다는 점, ③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 ③남북한관계의 진전 등을 이유로 들어, 동법률에 대한 폐지 또는 대폭적 개정을 권고하였다(“진정 제22호 김준배 사건 결정문”).

시민으로서는 준법이 당연한 의무인데 유독 특정 공간 사범에 대해서 현행 법질서의 준수 의사를 '외부로 표현'—서약했을 때에 한해서 그들의 가석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준법서약을 거부한 이들로 하여금, 계속되는 수형생활 중에 '거부자'로서의 차별적 처우와 심지어 가혹행위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도록 만든다. 준법서약제는 과거의 사상전향제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하지만 변형된 제도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를 거부한 양심수도 있고 이들의 거부 의사를 당국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⁴⁶⁾

권고 42: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입법화한다.

의문사 사건 중에는 중대한 인권유린의 범죄로부터 초래된 예가 있다. "인정" 사건 그리고 "인정" 사건은 아니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입증된 사건의 경우, 살인과 폭행, 고문, 이 사실에 대한 조작과 은폐 등이 주요 원인과 정황을 구성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어려운 조사 여건 하에서도 그 범죄의 당사자를 일부나마 밝혀냈으나, 대부분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강요된' 의혹 속에 진실이 묻혀있는 동안, 사건의 법정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률적 부조리가 반복된다면, 유사 범죄의 재발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없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배제를 입법화함으로써 의문사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6) 유엔 인권위원회는 "준법서약제"에 대해서 비판적 논평과 함께 폐지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서약의 요구가 차별적으로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 기결수에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규약과 위배되는 법률에 대한 준수 서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Para. 1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CCPR/C/79/Add. 114, 1 November 1999).

권고 43: 고문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수사과정이나 행정과정에서 가해지는 고문은 그 공간의 폐쇄적 특징과 결합하여 의문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문 방지는 곧 의문사 방지의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는 앞서 수사제도상 그리고 행정행정에서의 가혹행위 가능성과 이에 대한 방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고문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문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독립적 기관의 설치를 권고한다. 고문 범죄의 주체는 보통 수사기관이나 형집행기관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조사와 그 후속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문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와 피의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⁴⁷⁾

권고 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공개 제한범위를 축소한다.

의문사 의혹이 제기된 상당수의 사건은 사망 원인과 별개로 수사나 행정 과정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그 같은 정보의 비공개가 유족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유족의 진실 접근 노력에 대해 공권력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의혹을 증대시키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낳는 것이다.

47) 이 권고는 국제사회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있다(Para. 6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Republic of Korea, A/52/44, 13 November 1996; Para. 14,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CCPR/C/79/Add. 114, 1 November 1999).

실제로 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예에서도 동일한 요인이 일반 변사 사건을 의문사로 발전시킨 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⁴⁸⁾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범위가 협소하여 현장 수사기관이나 형집행기관 등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때, 변사 사건의 유족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관련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당할 수밖에 없다.⁴⁹⁾

44-1. 현재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화한다.

44-2. 사실상 절대적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경우도 그 내용과 질을 구분하여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최소화한다.

44-3. 현재 보장되고 있는 부분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청구된 정보에서 공개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가르는 기준과 원칙을 명문화한다.

48) 정보공개법 제1조

49) 일례로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이라고 규정한다(제7조 3항).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기본으로 하면서 “비공개”를 예외로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공개”의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해놓으면, 그 법률의 의미는 사실상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바.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국가의 조치

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기간에 발생한 의문사와 같은 인권침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권고 45: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권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권 교과목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의 수준에 맞는 깊이와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문사’와 같은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국가는 ‘기억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정의내릴 수 있는 능력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26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 유엔아동권리협약 29조, 여성차별철폐조약 10조, 인종차별철폐조약 7조, 비엔나선언 33~34조, 비엔나행동프로그램의 78~82조 등 주요한 국제인권규범은 인권교육을 권리로 규정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존중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 중에는 ‘인권교육’의 실천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

권고 46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희생자 중에는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도 발생했다는 사실, 그러한 희생자를 낳게 한 고문, 살인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권 및 사회윤리 관련 교과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인권교과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깨닫게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헌법·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권기준들을 내면화해야 한다.

인권 등의 교과서에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과 의문사를 낳게 한 가해 기관 및 책임자를 수록해야 한다. 교과서에 수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국가가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고 희생자의 가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과서에는 세계인권선언, 주요 국제인권조약, 헌법의 기본권편이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의 목록과 내용, 주요 국제인권기구의 역할과 인권구제절차, 국내외 인권 관련 NGO의 활동 내용,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그것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권고 47: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국민에 대한 감시, 체포, 구금과 관련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선발 및 양성과정에 인권 교과목을 신설하고,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 기본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에는 대표적인 의문사 사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경찰, 국정원, 각종 사관학교 및 기무사와 헌병, 사법연수원, 교정기관 등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유엔이 제정한 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1979년)을 널리 알리고, 인권기본규정을 제정하고,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담당자(가칭 인권교육사)를 양성해야 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인권교육은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반인권적 편견과 가치가 태동하거나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권의 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의문사 사건을 이용한 인권교육은 의문사를 발생시켰던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법집행 공무원과 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의식 등을 개선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 대사회적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으며,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사 등으로 인해 실추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고 48: 국가는 의문사 피해자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벌여야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

의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기념사업은 그 자체가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그런 국가의 행위를 통해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으로 기억을 보존할 수 있다.

국가는 기념식, 공공건물 또는 도로의 명명, 기념물 조성, 피해자에 대한 연례적인 추모 등의 기념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며, 답사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인권활동가, 해당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연구단체, 피해자의 가족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권고 49: 국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담은 이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국가기관 및 각급 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고서가 국민들과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적절하고도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의 각종 보고서는 국가기관과 각급 도서관 등에 충분히 배포되어 국민들과 공무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다양한 대상에 적합한 형식과 매체로 가공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즉 기념일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동화나 교안, 시나리오 등을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언론

을 통한 캠페인도 벌여나가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권고사항은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화되고 의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또한 대부분 소위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며, 국제 인권규범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한 권고이다.

국가는 위원회의 권고를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최저선'으로 받아들여, 위와 같은 권고 사항을 반드시 조속한 시기 안에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즉 행정부만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문사의 정황은 각 시기에 입법부나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 및 결정 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제도의 개선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조치

권고 50 : 국가는 위원회가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한정된 조사기한의 제한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말미암아 30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유가족과 친지들이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이며,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할 절대적인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의 죽음에 의혹이 있을 경우, 특히 국가기관이 그 죽음에 개입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을 경우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상규명을 해줌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전사회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문사란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의심이 드는 죽음'이어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하여 권위주의 통치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구체적 실상,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구체적 실태가 낱알이 공개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식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의문의 죽음에 대해 국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고 51: 위원회가 '인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 중에서도 진상규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본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고,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있다. 죽음의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지고, 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되었지만 죽음이 발생하

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과 타살자를 밝혀내지 못한 것 등이 있다. 또한 그 죽음이 은폐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잘못 조사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위원회가 기각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이 확인되거나 그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행정적 조치 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 결 론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기 자행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또 그로 말미암아 야기된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하여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냉대를 겪어야 했으며 친지와 이웃으로부터도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과정에서 생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으며 소요된 경비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고 유족들의 삶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국가와 사회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러한 고통을 돌보아야 한다. 위원회가 권고한 의문사 및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구제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되어 그들의 겪었던 고통의 일부분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그 구성원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피해보상 방안의 하나는 지난날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한 불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의문사 사건을 발생시킨 국가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수없이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실도 알았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

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과거의 불행이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갈등과 불신감을 야기할 것이다. 국가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를 둘러싼 의혹과 분열상을 피할 수 없다.

국가는 본 권고안에서 제시한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며, 국가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법적인 권한과 조사기한의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침해의 실상과 제도적, 관행적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각종 사회단체, 언론,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도움을 기억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풍토가 미흡하고, 여전히 진실의 규명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의 이해관계와 위신, 주변 동료들로부터의 압력, 진실이 공개되었을 때 자신이 혹시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 등을 의식하여 진실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조직과 동료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풍조가 남아 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은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진실을 말한 증언자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가는 이들 증언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다. 과거의 감추었던 사실들을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장차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해 나가는데 치명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의문의 죽음만을 조사하였다. 위원회가 진정 받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의문사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기에 자행되었던 인권침해 사건 중에 극히 일 부분이다. 일반 군 의문사들의 경우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은 없지만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 또는 국가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의문사 사건들이 많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는 의문사 사건도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되는 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기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고문, 폭행 및 가혹행위, 감시 및 차별, 프락치 공작 등 불법수사, 강제징집, 계엄하에 초법적인 인권침해 등 다양한 방식의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은 위원회가 갖고 있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었다.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문제도 보다 넓고 철저한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의문사 진상규명의 성과가 과거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에 대한 좀더 넓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은 불행한 과거사의 일부를 덮고 넘어가는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선례로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가 권위주의 통치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총체적이고, 철저하게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진실규명 작업이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청산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와 사회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위해 별도의 새로운 진상규명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과거의 일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묻어 두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런 과거를 초래했던 문제들을 여전히 싸안고 미래로 향하는 셈이다. 이는 과거의 불행을 미래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권위주의 통치로 우리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을 후손들에게 또다시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 불행한 과거사를 진실에 의거하여 청산하고, 또 진실에 바탕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적인 책무이다.